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41
----------	-------

발의연월일 : 2026. 9. 17.

발 의 자 : 최기상 · 김남준 · 김영환
한민수 · 한정애 · 권칠승
서삼석 · 이광희 · 정준호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전력산업의 여건은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음.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주된 발전설비도 화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형 발전기에서 태양광 · 풍력 ·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버터 기반 자원(IBR)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는 종전의 틀에 머물러 있어,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나아가, 전력산업에 관한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통로가 마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전력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과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력산업에 접목 ·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약하

고 있음.

이에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관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감독 체계를 실질화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방대한 정보를 통합·관리·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등 전기설비 이용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이 정보 공개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 2).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전기설비의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기 위한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41조).

다.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업무의 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 14까지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를 “하며, 제6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감독원(이하 “전력감독원”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⑥ 전력감독원은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3항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위치
2. 전기설비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3. 전기설비의 부하율

4. 전기설비에 연계된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

5. 그 밖에 전기설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전력감독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다)”를 “같다)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 그 밖에 전력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기 위하여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전력계통의 물리적·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을 위해 국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에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

10의4.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6장의2(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전력감독원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기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0조의3(사무소) ① 전력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60조의4(설립등기) ① 전력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의5(정관) ① 전력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0조의6(업무)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 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2.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의 허가·등록, 약관, 요금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3. 전기품질 유지, 전기설비의 이용,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4. 송전·변전, 배전 설비계획 조사·평가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5. 제15조에 따른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6. 제16조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7.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사
 8.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이에 대한 검토 및 지원
 9.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裁定)에 대한 지원
 10.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및 중개시장의 소규모전력자원 모집·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지원
 11.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에 대한 조사 및 평가
 12.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분석 보고서의 발간
 13.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및 국제협력
 14.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5.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수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감시, 조사 및 평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7(운영재원)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0조의9에 따른 분담금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0조의8(출연금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9(분담금 등) ① 전력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들은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10(업무의 독립성·중립성 등) ① 전력감독원은 소관 업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 대상에 대하여 중립성

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들은 전력감독원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를 통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독립성 또는 공정성 저해 행위에 대한 임직원 보호 등을 고려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⑥ 전력감독원은 임직원과 감독 대상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60조의11(관리·감독) ① 전력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

의6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0조의1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14(「민법」의 준용) 전력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전기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관한 업무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 마련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한 평가·조사

제9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력감독원의 임직원

제10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0조의1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제108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60조의12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준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한국전력감독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력감독원의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전력
감독원의 최초의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
으로 전력감독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
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
로 본다.

⑦ 전력감독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생략) ② <u>전기사업자</u>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u>한다</u> .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기사업자등</u> ----- ----- ----- <u>하며,</u> <u>제6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감독원(이하 “전력감독원”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u>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 ④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u> ⑥ <u>전력감독원은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생략) <u><신 설></u>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u>

	<u>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3항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u> <u>1. 전기설비의 위치</u> <u>2. 전기설비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u> <u>3. 전기설비의 부하율</u> <u>4. 전기설비에 연계된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u> <u>5. 그 밖에 전기설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u><신 설></u>	<u>③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④ 전력감독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을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 ----- ----- ----- ----- ----- -----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
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
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
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
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1조(정보의 공개) ①·② (생
략)

<신설>

<신설>

----- 같다) 또
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

---.

② -----

----- 공무원 또
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정보의 공개)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
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신 설>

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 그 밖에 전력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기 위하여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전력계통의 물리적·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을 위

	<u>해 국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신 설></u>	<u>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	<u>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삭제	
<u><신 설></u>	<u>10의3.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u>
<u><신 설></u>	<u>10의4.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의</u>

11.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11. · 12.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한국전력감독원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기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0조의3(사무소) ① 전력감독

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60조의4(설립등기) ① 전력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 설>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의5(정관) ① 전력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신 설>

거쳐야 한다.

제60조의6(업무) ① 전력감독원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
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
발 지원

2.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의
허가·등록, 약관, 요금에 관
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3. 전기품질 유지, 전기설비의
이용,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에 대한 조사 및 평가

4. 송전·변전, 배전 설비계획
조사·평가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5. 제15조에 따른 송전용·배
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기
술적 검토 및 지원

6. 제16조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기
술적 검토 및 지원

7.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
반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
사

8.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이

에 대한 검토 및 지원

9.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
의 재정(裁定)에 대한 지원

10.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및
중개시장의 소규모전력자원
모집·관리 등의 분쟁조정
에 관한 지원

11.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에 대
한 조사 및 평가

12.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
에 관한 분석 보고서의 발간

13.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
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의 양성·교육 및 국제협력

14.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
독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
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5.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
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수한 업무로서 정
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감시, 조사
및 평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

<신 설>

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7(운영재원)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0조의9에 따른 분담금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60조의8(출연금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다.

제60조의9(분담금 등) ① 전력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은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10(업무의 독립성·중립성 등) ① 전력감독원은 소관 업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 대상에 대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등은 전력감독원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를 통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제2항

<신 설>

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독립성 또는 공정성 침해 행위에 대한 임직원 보호 등을 고려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⑥ 전력감독원은 임직원과 감독 대상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60조의11(관리·감독) ① 전력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

<신 설> <신 설> <신 설>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0조의1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14(「민법」의 준용) 전력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② (생략)

<신설>

④·⑤ (생략)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전기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관한 업무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 마련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한 평가·조사

④·⑤ (현행과 같음)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1. 2. (현행과 같음)

3. 전력감독원의 임직원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u><신설></u> 7. (생략) ② · ③ (생략)	제102조(벌칙)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60조의1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6의2. 제60조의12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